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55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단5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영(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건희, 박중광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이 유

-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가. 주위적 공소사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57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성사서함에 "시어머니가 물이 안 나와서 빽빽해? 미친년"이라는 성적수 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목적범이다.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창회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여 왔는데,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내용은 위 과정에서 나온 말인 점, 2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22:5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50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성사서함에 "시어머니가 물이 안 나와서 뻑뻑해? 미친년"이라는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